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위자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조치 신설 〉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745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위자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조치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5.
3. 회 부 일 : 2025. 9.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예정인 개정법률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체 채팅방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성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성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 분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폭력행위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위자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신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폭력 사건 처리 기간 동안 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보호조치에 성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등).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30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¹⁾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u>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법률 제20930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u>1. 피해자 또는 성폭력행위자에</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③ ~ ⑤ (생략)	<u>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또는 전보 조치</u> 2. <u>성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u> 3. <u>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③ <u>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u>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현행법²⁾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

1) 2025.10.23. 시행됨.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10.23. 시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5.10.23. 시행>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

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³⁾”이라 함)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기관등의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직장내에서 피해자와 성폭력 행위자를 분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자 보호조치에 성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⁴⁾의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도 피해자와 성폭력행위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 제5조의4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사건 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리기간 동안 직장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보호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는 금지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2호⁵⁾는 사법경찰관은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응급조치의 하나로 스톱킹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톱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 있는데,

법원의 사후승인절차, 긴급응급조치의 기간, 스토킹행위자의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수단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스토킹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를 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신청할 의무가 있고, 긴급응급조치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이 없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하여야 하며, 긴급응급조치의 기간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 그 밖에도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통지의무 및 불복방백고지의무⁷⁾, 항고 및 재항고 절차⁸⁾, 긴급응급조치를 미이행한 자에게 형사처

-
-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¹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3호¹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제3호·제36조제1항제2호·제47조제1항제3호¹²⁾ 등에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판사가 결정으로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불분명하여 법 집행의 강제성과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스토킹 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전기통신 접근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법부의 판단 없이 행정부가 직접 접근 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50
